

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
번호 2017-

제출일자 : 2017. 04. .

제 출 자 : 거창군수

1. 요구이유

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및 거동 불편 노인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휠체어택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 업 명: 거창군 휠체어택시 사업 민간위탁

나. 사 업 량: 휠체어택시 차량 2대

다. 위탁대상 사무

- 휠체어택시 위탁운영(2대)
- 그 외 위탁차량 관리 및 차량 운행 서비스 사무 관리

라. 그간 운영상황

- 수탁기관: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
- 위탁기간: 2014. 5. 16. ~ 2017. 5. 15.(3년간)
- 위탁차량

차 종	규 격	차량번호	승차인원	연 식	비 고
중형승합	그랜드 스타렉스	74우8590	7명	2011년	* 휠체어리프트 장착
중형승합	그랜드 스타렉스	79서1654	7명	2007년	

○ 최근 3년간 차량 이용현황

- 2014년도: 1,256명(1일 평균 운행횟수 2.5)
- 2015년도: 1,632명(1일 평균 운행횟수 3.3)
- 2016년도: 2,100명(1일 평균 운행횟수 4.0)

마. 운영계획

○ 재위탁 운영

- 수탁기관: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(지회장 백승모)
- 위탁기간: 2017년 5월 16일 ~ 2018년 6월 30일까지
- 위탁내용: 휠체어택시 운영, 차량관리 및 운행서비스 사무관리 등

3. 참고사항

가.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

- 오랜기간 동안 본 사업을 운영한 결과 운영자의 축적된 경험과 교통편의 지원에 대한 노하우를 통해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에게 서비스 제공 유리

나. 관계법령
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- 「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」 제4조

다. 향후일정

- 위·수탁 계약 체결: 2017. 5.
- 위탁 운영: 2017. 5. 16. ~ 2018. 6. 30.

라. 소요예산

- 위탁운영비: 54,000천원

마. 위탁운영 계획안: 붙임 참조

거창군휠체어택시 민간위탁 운영계획

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및 거동 불편 노인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휠체어택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함

1. 추진근거
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- 「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」 제4조

2. 사업현황

- 위탁차량

차종	규격	차량번호	승차인원	연식	비고
중형승합	그랜드 스타렉스	74우8590	7명	2011년	* 휠체어리프트 장착
중형승합	그랜드 스타렉스	79서1654	7명	2007년	

- 위탁사업비: 54,000천원(2017년)

3. 그간의 추진사항

- 수탁기관: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
- 위탁기간: 2014. 5. 16. ~ 2017. 5. 15.(3년간)
 - ※ 2002년 5월부터 계속하여 위탁운영
- 위탁차량: 2대
- 최근 3년간 차량 이용현황
 - 2014년도: 1,256명(1일 평균 운행횟수 2.5)
 - 2015년도: 1,632명(1일 평균 운행횟수 3.3)
 - 2016년도: 2,100명(1일 평균 운행횟수 4.0)

4. 위탁추진 계획

□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: 재위탁

- 수탁업체: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(지회장 백승모)
- 수탁업무: 휠체어택시 운영(2대)
 - 관내 교통약자인 장애인·거동불편 노인 등에게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
 - 위탁차량 관리 및 차량 운행 서비스 사무 관리
- 수탁기간: 2017. 5. 16. ~ 2018. 6. 30.

□ 선정 기준

- 수탁기관의 적정성
- 차량운행의 전문성 및 책임성
- 휠체어택시사업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등

□ 위탁범위

- 관내 교통약자인 장애인·거동불편 노인 등에게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
- 휠체어택시 유지·관리
- 휠체어택시 이용 홍보
- 기타 관리 필요에 따라 지시하는 사항

□ 향후 추진일정

- 협약체결: 2017. 5.
- 위탁운영: 2017. 5. 16. ~ 2018. 6. 30.

5. 소요예산

- 2017년 위탁사업 운영비 54,000천원

6. 기대효과

- 장애인·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활동제공
- 다양한 복지사업 제공 및 일자리 창출
-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

관 련 법 규

□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 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

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(개정 2013.6.12)

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.(개정 2013.6.12)

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·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(개정 2013.6.12)

□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

제4조 (운영) ① 군수는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법인등(이하"수탁자"라 한다)에 운영을 위탁·관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휠체어택시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,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휠체어택시를 위탁할 시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